

2021년도  
본청3차[국악문화체육과]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



영 동 군

# 감사내용 및 결과 공개문

## 《 감사내용 》

### ■ 기간 및 범위

- 2021. 9. 6. ~ 9. 10.(5일간) / 2018. 9월부터

### ■ 감사반 : 기획감사관 외 5명

### ■ 감사중점

- 예산·회계 집행 실태
- 민원처리 실태 및 각종 시설공사 집행현황
- 각종 소관업무 확인, 점검, 관리 등 업무처리실태

## 《 감사결과 》

### ■ 총 지적건수 : 13건

### ■ 조치계획

- 행정상 조치 : 13건 (주의 7건, 시정 6건)
- 재정상 조치 : 회수 3,803,700원
- 신분상 조치 : 해당없음

## 《 수범사례 》

### ■ 코로나 19 대응 다중이용시설 점검

- 코로나19 지역 내 확산방지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200개소, 노래연습장 27개소, PC방 5개소, 관광지 8개소, 야영장 11개소, 실내체육시설 42개소)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자체 점검 및 중앙부처, 충북도, 유관기관 등과의 합동점검을 실시

- 붙임 1. 주요지적사항 1부.  
2. 감사결과 처분서 13부. 끝.

## 주요 지적사항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안)		
		행정상	신분상	금액
총계	총 13건	주의 7 시정 6		3,803,700원
1	◦ 전자적 방식의 업무 인계·인수 이행 소홀	시정		
2	◦ 공무원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소홀	주의		
3	◦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주의		
4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업무 소홀	시정		회수 11,570원
5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소홀	시정		
6	◦ 피복비 집행 부적정	주의		
7	◦ 공공요금 납부 소홀	시정		회수 3,190원
8	◦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관리 소홀	시정		
9	◦ 공용차량 운행관리 소홀	주의		
10	◦ 난계국악단 공연수입금 세입조치 소홀	주의		
11	◦ 민간보조사업 정산검사 업무 소홀	주의		
12	◦ 시설공사 간접공사비 정산 부적정	시정		회수 3,789,000원
13	◦ 설계변경 집행 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미이행	주의		

【 일련번호 : 1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전자적 방식의 업무 인계·인수 이행 소홀

【현 황】

○ 업무 인계·인수 전자결재 내역

연번	인계자		인수자		담당일	전자결재 여부	비고
	직급	성명	직급	성명			
1	□□8급	A	□□8급	B	2020.11.16.	부	국악진흥팀
2	□□7급	C	□□8급	A	2020.11.16.	부	체육진흥팀
3	□□8급	D	□□9급	E	2020.12.01.	부	관광팀
4	□□8급	F	□□8급	B	2021.01.10.	부	문화예술팀
5	□□8급	B	□□9급	G	2021.01.10.	부	국악진흥팀
6	□□8급	B	□□7급	H	2021.03.08.	부	문화예술팀
7	□□8급	B	□□8급	I	2021.07.01.	부	문화예술팀
8	□□7급	J	□□7급	K	2021.07.01.	부	국악진흥팀
9	□□7급	C	□□7급	L	2021.07.01.	부	체육진흥팀

【위법부당사항】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영 제61조에 따라 업무관리 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업무인계·

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행정과에서는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전자적 방식의 업무 인계·인수 이행 철저[행정과-19286(2020. 9.11.)호]」 공문을 시행하여 모든 군 소속 공무원은 인사이동(조직개편, 업무분장 변동 포함)에 따른 전자적 방식의 업무 인계·인수를 이행하되, 팀장급은 온나라 인계·인수 입력 완료 후 인계인수서를 출력하여 행정과로 제출하고, 팀원은 온나라 인계·인수 입력 완료 후 인계인수서를 부서장 결재 후 자체보관 토록 하였음.
- 그러나, 군수님 지시사항 이후 국악문화체육과 직원들의 업무 인계·인수 전자결재 내역을 감사일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 [현황]과 같이 9건의 인사이동(인사발령 및 업무분장 조정)에 대하여 전자적으로 부서장 결재를 받지 않는 등 전자적 방식의 업무 인계·인수 이행을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처분내용】**

- 국악문화체육과장은 누락된 인계·인수를 이행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2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공무원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소홀

【현 황】

○ 공무원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교육현황

관리부서	사업명	대상자		차용시 교육	정기교육				비고
		근로자수	근로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문화예술팀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관리 및 환경정비	1	'20.07.01.~12.28.	8시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미 실시	6시간	
문화예술팀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환경정비	1	'20.01.02.~12.28.	미 실시	6시간	6시간	6시간	6시간	
문화예술팀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환경정비	1	'20.02.01.~12.28.	미 실시	6시간	6시간	6시간	6시간	
국악시설팀	종합안내소 운영관리	1	'20.01.02.~12.27.	미 실시	미 실시	미 실시	6시간	6시간	
국악시설팀	난계국악박물관 환경정비	1	'20.01.02.~12.27.	미 실시	미 실시	미 실시	6시간	6시간	
국악시설팀	국악체험촌 환경정비	8	'20.01.02.~12.27.	미 실시	미 실시	미 실시	6시간	6시간	
관광팀	양산팔경 금강돌레길 환경정비	2	'20.01.02.~12.19.	8시간	6시간	6시간	미 실시	미 실시	
관광팀	반야사~월류봉 문화 생태탐방로 환경정비	2	'20.01.02.~12.19.	8시간	6시간	6시간	미 실시	미 실시	
관광팀	추풍령 급수탑공원 환경정비	2	'20.01.06.~12.19.	8시간	6시간	6시간	미 실시	미 실시	
관광팀	추풍령 급수탑공원 환경정비	3	'20.02.10.~12.05.	8시간	6시간	6시간	미 실시	미 실시	
관광팀	포도터널	2	'20.02.10.~10.31.	8시간	6시간	6시간	미 실시	미 실시	
관광팀	관광지 방역 및 관리	1	'20.09.07.~10.30.	8시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채용교 육중복	해당 없음	
관광팀	관광지 방역 및 관리	5	'20.09.07.~12.21.	8시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채용교 육중복	미 실시	
관광팀	관광지 방역 및 관리	2	'20.09.07.~ '21.01.30.	8시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채용교 육중복	미 실시	
관광팀	관광지 방역 및 관리	1	'20.09.07.~ '21.01.31	8시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채용교 육중복	미 실시	
관광팀	관광지 방역 및 관리	20	'20.09.07.~ '21.02.09	8시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채용교 육중복	미 실시	
관광팀	관광지 방역 및 관리	1	'20.10.12.~12.31.	8시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채용교 육중복	
관광팀	관광지 방역 및 관리	1	'20.10.12.~ '21.01.30.	8시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채용교 육중복	
관광팀	관광지 방역 및 관리	3	'20.10.12.~ '21.02.09.	8시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채용교 육중복	

관리부서	사업명	대상자		채용 시 교육	정기교육				비고
		근로자수	근로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문화예술팀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관리 및 환경정비	1	'21.01.04.~12.28.	미 실시	6시간	6시간	시기 미도래	시기 미도래	
문화예술팀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환경정비	2	'21.01.04.~12.28.	미 실시	6시간	6시간	6시간	시기 미도래	
국악시설팀	종합안내소 운영관리	1	'21.01.04.~12.27.	미 실시	3시간	6시간	6시간	시기 미도래	
국악시설팀	난계국악박물관 환경정비	1	'21.01.04.~12.24.	미 실시	3시간	6시간	6시간	시기 미도래	
국악시설팀	국악체험촌 환경정비	7	'21.01.04.~12.27.	미 실시	3시간	6시간	6시간	시기 미도래	
관광팀	양산팔경 금강둘레길 환경정비	2	'21.01.11.~12.17.	8시간	6시간	6시간	시기 미도래	시기 미도래	
관광팀	반야사~월류봉 문화 생태탐방로 환경정비	2	'21.01.11.~12.17.	8시간	6시간	6시간	시기 미도래	시기 미도래	
관광팀	추풍령 급수탑공원 환경정비	1	'21.01.11.~12.17.	8시간	6시간	6시간	시기 미도래	시기 미도래	
관광팀	추풍령 급수탑공원 환경정비	1	'21.01.11.~06.01.	8시간	6시간	미 실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관광팀	추풍령 급수탑공원 환경정비	2	'21.03.02.~12.17.	8시간	6시간	6시간	시기 미도래	시기 미도래	
관광팀	추풍령 급수탑공원 환경정비	1	'21.03.02.~06.01.	8시간	6시간	미 실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관광팀	추풍령 급수탑공원 환경정비	2	'21.07.05.~12.17.	8시간	해당 없음	6시간	시기 미도래	시기 미도래	
관광팀	포도터널	2	'21.03.02.~11.30.	8시간	6시간	6시간	시기 미도래	시기 미도래	

### 【위법부당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고,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면 법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sup>1)</sup>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

1)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 가. 정기교육(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외의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등

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 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 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부서에서는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신규 채용 시 일용근로자의 경우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이외의 근로자의 경우 8시간 이상의 신규채용교육을 이행하여야 하며, 채용 이후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경우 분기별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이외의 근로자의 경우 분기별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이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그러나, 2020년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국악문화체육과에서 채용한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실태를 점검한 결과 [현황]과 같이 신규 채용 시 교육 및 정기교육을 일부 누락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분내용】**

- 국악문화체육과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3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현 황】

○ 부적정 현황

건 명	편성과목	적정과목	비고
유선방송료(박물관, 체험촌)	공공운영비(공공요금및제세)	사무관리비(일반수용비)	
전기/승강기/소방 안전관리대행 수수료(영동북합문화예술회관)	공공운영비(시설장비유지비)	사무관리비(일반수용비)	

○ 일반운영비 예산 집행 부적정 현황

건 명	집행내용	집행과목	지출일	부적정 사유	비고
국악체험촌 무선마이크 송수신기 세트 구입	무선헤드마이크 시스템(440,000원×4세트) 총1,760,000원	사무관리비	19.07.16.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예산편성없이 사무관리비(일반수용비)로 집행	
관광지 방역관리를 위한 천막 구입	텐트(528,000원×6세트) 총3,168,000원	사무관리비	20.09.18.		
영동북합문화예술회관 수납장 구입	수납장 1세트 330,000원	사무관리비	20.12.18.		
난계국악단 연주용악기 구입	소금 1세트 220,000원	사무관리비	21.05.24.		

【위법부당사항】

○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에 따르면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는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으로 분류하며, 세부분류 내용은 별표 11과 같다고 되어 있고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는 사무관리비로 1. 일반수용비, 2. 위탁교육비, 3. 운영수당, 4. 피복비, 5. 급량비, 6. 임차료를 편성토록하며, 공공

운영비로 1. 공공요금 및 제세, 2. 연료비, 3. 시설장비유지비, 4. 차량 선박비, 5.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음.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 따르면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는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소모성 물품구입 및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냉온수기 소독료, 환경측정기기 정밀검사수수료, 방역수수료 등 소규모 용역(행사용역은 제외)에 대한 역무대가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또한, 공공요금은 철도, 우편, 전신, 전화, 수도, 전기 등의 공익사업에 대해 정부가 결정하거나 법률적으로 관여하는 요금을 말하며, 제세공과금은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 국세 등의 여러 세금과 공적 부담금 등을 말함.
- 그럼에도, 국악문화체육과에서는 사무관리비(일반수용비)로 편성해야 할 유선방송수신료(박물관, 체험촌)와 각종 안전관리 대행수수료(복합문화예술회관) 공공운영비에 편성하여 집행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할 무선마이크 세트 등에 대해 별도 예산편성없이 사무관리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처분내용】

- 국악문화체육과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4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11,57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업무 소홀

【현 황】

### 1. 시간외근무수당 부적정 산정 내역

근무일자	직급	성명	휴일	근무	출근	퇴근	수당	적정	비고
			구분	구분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2020.03.29.	지방□□	□□□	휴일	일반	08:30	13:30	300	240	코로나19예방 주일에배점검

### 2. 시간외근무수당 과오지급 내역

[단위 : 시간, 원]

직급	성명	단가	실지급내역				적정지급내역				차액	비고
			기본	초과	합계	금액	기본	적정 초과	합계	금액		
합계			10	12	22	254,510	10	11	21	242,940	11,570	
지방□□	□□	11,569	10	12	22	254,510	10	11	21	242,940	11,570	2020.03월

### 【위법부당사항】

-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며, 지급기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개인별, 초과근무일별 초과근무 사전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초과근무한 자는 근무종료 후 지문인식 등을 통해 초과근무 내역을 확인하여야 함.

- 행정과에서 시행한 영동군 시간외근무 관리·운영 계획에 따르면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시간 인정범위가 1일 4시간, 월57시간이며, 비상근무 시 일일 상한시간은 8시간, 월70시간 범위 내에서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인정하고 있음
- 그러나, 국악문화체육과에서는 [현황1]과 같이 지방□□ □□□에 대하여 적정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잘못 책정하였고, [현황2]와 같이 실제 근무시간보다 과다하게 산정된 시간외근무수당 11,570원을 행정과에 제출하여 지급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처분내용】

- 국악문화체육과장은 과오지급된 수당 11,570원을 회수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5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소홀

【현 황】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미공개 현황

연도	공개 세부내역	미공개 세부내역	비고
2018년	-	2018.09.~12.	
2019년	-	2019.01.~12.	
2020년	-	2020.01.~12.	
2021년	-	2021.01.~08.	

※ 영동군 홈페이지 정보공개 업무추진비 공개자료 재구성

【위법부당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행정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사용내역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확대 시행으로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함.
- 또한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806(2020.2.25.)호와 관련하여 2020. 3. 3일 행정과에서 발송한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공개 확대 시행에 따른 정비 요청」 공문에 따르면,
- “2020년 3월 집행분부터 단체장, 과장급이상, 부서별, 지방의원,

소속기관장 등은 ‘목적, 대상, 금액, 방법, 장소, 사용일시, 대상 수(인원)를 매월 또는 분기별로 영동군 홈페이지에 공개’ 토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국악문화체육과에서는 [현황]과 같이 2018년 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우리군 홈페이지에 부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한 내역이 없음.

### **【처분내용】**

- 국악문화체육과장은 미공개 사용내역에 대해 즉시 공개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6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피복비 집행 부적정

【현 황】

○ 피복비 집행현황

지출일	예산과목	구입내역	구입처	지출금액(원)	비고
18.10.19.	사무관리비	국악체험촌 청원경찰 피복비 구입	아디다스	200,000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 따른 사무관리비(201-01) 중 피복비 부분을 살펴보면 “피복은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고 기타 지원요원 등에게 확대 지급하지 않아야 하고, 청원경찰 복장 등 통일된 복장을 구입할 경우 회계부서에서 일괄하여 집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 외의 자에게 본 과목에서 피복을 구매하여 지급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국악문화체육과에서는 [현황]과 같이 제복이 아닌 일반 기성복을 스포츠의류 매장에서 구입하여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등 부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국악문화체육과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7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3,19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공공요금 납부 소홀

【현 황】

○ 공공요금 연체료 납부 내역

(단위:원)

연번	건명(고객번호)	지출일	납부금액	연체료	가산금	비고
합계			1,240,090	3,139	60	
1	황간향교 (13 2265 1919)	20.10.27.	16,590	66		
2	난계사 (13 2279 0289)	20.10.27.	5,490	9		
3	소석고택 (13 2173 6723)	20.10.27.	45,840	89		
4	반야사주차장 화장실 (13 2622 2484)	20.10.27.	159,600	1,045	30	
5	월류봉간이화장실 (13 2557 8770)	20.10.27.	17,700	20		
6	월류봉가로등 (13 2149 1372)	20.10.27.	21,130	25		
7	황간면 월류봉길 (13 2477 8165)	20.10.27.	14,010	17		
8	황간면 원촌리 (13 2631 1707)	20.10.27.	106,630	164		
9	천태산 전기요금 (13 2010 2446)	20.10.27.	91,780	293		
10	양산면 천태산진입길 (13 2017 7348)	20.10.27.	30,970	86		
11	양산면 누교리 (13 24804699)	20.10.27.	3,890	5		
12	양산면 천태산진입길 (13 0343 7457)	20.10.27.	53,500	140		
13	봉곡교 경관조명 (13 2612 4278)	20.10.27.	67,810	76		
14	영동레인보우영화관 (13 2465 1041)	20.11.25.	605,150	1,104	30	



##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 의하면 공공요금의 조회·납부 시에는 자동이체 및 인터넷 빌링(Billing)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절약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근거하여 관련부서의 회계담당직원은 신규로 추가된 시설의 경우 개별고지납부를 지양하고 인터넷 빌링(Billing)을 신청하여 합산 청구토록 관리함이 바람직하며, 자동이체의 경우 세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출하여 계좌로 입금하여 자동이체 되도록 하고 있는바, 매월 청구되는 요금을 납부일까지 자동이체 공공요금 계좌로 입금 조치하여 연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고지서 청구건에 대해서도 납기일 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 그럼에도, 국악문화체육과에서는 전기요금 납부대상에 대한 정확한 관리를 통해 요금이 연체되지 않도록 하였어야 하나, 적기에 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연체된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총14건의 고지건에 대해서는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아 3,199원의 연체료 및 가산금이 부과된 사실이 있음.

## 【처분내용】

- 국악문화체육과장은 예산지출처리된 연체료 및 가산금을 회수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8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관리 소홀

【현 황】

### 1. 법인카드 관리 현황

발급일자	카드번호	보관책임자		용도	발급대장 등재	비고
		직	성명			
18.10.15	9430-****-****-****	□□6급	M	유류구매카드	○	
21.01.12	5585-****-****-****	□□6급	M	신용카드결제 및 급식비결제계좌	-	
18.02.17.	9430-****-****-****	□□6급	M	하이패스	-	국악단
20.01.30.	9430-****-****-****	□□6급	M	하이패스	-	국악단
18.10.15.	9430-****-****-****	□□6급	M	유류구매카드	○	국악체험촌
16.01.12.	5585-****-****-****	□□6급	M	신용카드결제 및 급식비결제계좌	○	체육진흥팀
17.07.11.	9430-****-****-****	□□6급	M	하이패스	○	배드민턴팀
17.07.11.	9430-****-****-****	□□6급	M	하이패스	○	육상팀
21.01.22.	9430-****-****-****	□□6급	M	하이패스	-	관광팀
21.02.02.	9430-****-****-****	□□6급	M	하이패스	-	여자씨름단

### 2. 사용관리 부적정 현황

결제일	청구액(원)	내용	인출일	인출액(원)	연체료(원)
합계					1,412
19.02.12.	1,942,500	19.2월 청구분	19.02.12.	1,934,628	103
			19.02.14.	7,875	
21.04.12.	5,069,000	21.4월 청구분	21.04.12.	4,864,496	168
			21.04.15.	204,672	
21.05.12.	6,300,510	21.5월 청구분	21.05.12.	5,941,068	1,138
			21.05.13.	70,197	
			21.05.20.	119,000	
			21.05.24.	171,383	
21.05.12.	7,400	21.5월 청구분[하이패스]	21.05.12.	0	3
			21.05.13.	7,403	

##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7]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계좌는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의 책임하에 기관명의로 개설하고, 부서별로 발급된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대장에 등재(별표 제1호 서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카드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재무관 까지 보고하고, 분임재무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함.
- 신용카드 사용시 회계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카드대금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과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 조치 토록 되어 있음.
  - ①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 품의
  - ② 가격 비교 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한다. ⇒ 원인행위
  - ③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여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을 결정 및 지급(해당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다. ⇒ 지출
- 그럼에도, 국악문화체육과에서는 위 [현황1]과 같이 법인카드 발급 5건에 대하여 대장을 작성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2020. 8월 이후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고하지 않았고, [현황2]와 같이 신용카드 사용대금에 대한 지출처리 및 계좌관리를 소홀히하여 연체료 가 발생하는 등 카드 사용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분내용】

- 국악문화체육과장은 대장에 누락된 법인카드발급 건에 대해 작성하여 관리하시고, 결제계좌잔액으로 처리된 연체료를 계좌에 입금조치 하시고,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9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공용차량 운행관리 소홀

【현 황】

○ 공용차량 운행일지 관리 소홀 현황

연번	차량 등록번호	차명	연식	용도	실제운행기록	시스템 작성 운행기록	최종 운행일지 작성일
1	94너59□□	포터2 더블캡 초장축	2020	관광팀 업무추진	13,446	4,707	2021.08.18.
2	81저81□□	아-마이티	2013	약기수송용 차량	21,071	20,956	2020.08.21.
3	88러82□□	봉고Ⅲ4륜 구동	2016	국악체험촌 관리	4,236	3,173	2019.07.25.

【위법부당사항】

- 「영동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9조(차량 직접운전) 및 제31조(운행종료 등)에 따르면 소속공무원은 업무능률 향상과 공용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차량을 배차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으며, 차량을 직접 운전한 운전자는 공용차량에 비치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차량집중관리부서(2차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 그럼에도, 국악문화체육과에서는 관광팀 업무추진을 위한 차량 외 2대의 차량에 대해 운행일지 작성을 소홀히 하여 실제운행기록과 시스템 작성 운행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등 공용차량 관련 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국악문화체육과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0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난계국악단 공연수입금 세입조치 소홀

【현 황】

○ 공연수입금 세입조치 현황

연번	입금일	세입조치일	금액	내 용	지연일
1	2018-09-21	2018-10-05	2,901,000	오산 시민의 날 초청공연	5
2	2018-10-31	2018-11-01	600,000	MBC충북 생방송 아침N 촬영	-
3	2018-11-14	2018-12-26	150,000	2018 행복교육지구 박람회 행복멘토 진로상담	28
4	2019-03-25	2019-03-27	2,400,000	총의사 추모제향 제례악 공연	1
5	2019-03-26	2019-03-27	500,000	특별상설공연(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
6	2019-05-02	2019-05-02	4,000,000	LH공사(진주) 초청공연	-
7	2019-04-26	2019-05-21	500,000	세종시 세상의 빛 교회 제일경로대학	15
8	2019-05-22	2019-05-23	500,000	특별상설공연(청주시 자원봉사센터)	-
9	2019-05-23	2019-06-04	500,000	특별상설공연(경기초등학교)	7
10	2019-06-07	2019-06-27	500,000	노근리 합동위령제 공연	13
11	2019-07-03	2019-07-30	1,000,000	유치원 연합회 특별상설공연	18
12	2019-09-18	2019-10-02	500,000	특별상설공연(초강초등학교)	9
13	2019-09-25	2019-10-02	3,000,000	오산시민의 날 초청공연	4
14	2019-10-02	2019-10-22	500,000	병무청 특별상설공연	11
15	2019-10-14	2019-10-22	500,000	대전 어은초등학교 특별상설공연	5
16	2019-10-15	2019-10-22	1,000,000	제44회 중봉총렬제 공연	4
17	2019-10-16	2019-10-22	500,000	대전 매봉초등학교 특별상설공연	3
18	2019-10-18	2019-10-22	600,000	충북MBC 생방송 아침N	1
19	2019-10-22	2019-11-05	500,000	노근리 평화상 시상식 축하공연	9
20	2019-11-04	2019-11-05	500,000	특별상설공연(보은 탄부면 노인복지대학)	-
21	2019-11-06	2019-11-18	386,800	금강길 굽이굽이 방송 촬영 공연	7
22	2019-11-13	2019-11-22	2,000,000	LH공사(세종) 공연수입금	6

연번	입금일	세입조치일	금액	내 용	지연일
23	2019-12-05	2019-12-11	2,000,000	충북자원봉사자대회 축하공연 수입금	3
24	2019-12-23	2019-12-26	1,000,000	특별상설공연 수익금	1
25	2020-05-29	2020-05-29	300,000	생방송 아침N 출연료	-
26	2020-07-30	2020-07-31	1,000,000	노근리 70주년 기념행사 공연 수입금	-
27	2020-09-04	2020-09-08	1,000,000	유원대학교 초청공연 수입금	1
28	2020-11-27	2020-12-02	4,500,000	노근리70주년 글로벌 평화포럼 개막식 공연	2
29	2021-01-22	2021-02-01	56,100	KBS청주방송, 생방송 지금 충북은	5
30	2021-07-29	2021-08-12	600,000	노근리희생자 합동 위령행사 식전 공연	9
31	2021-08-25	2021-08-30	200,000	KTV 사운드멘터리 풍경소리 시즌4	2

### 【위법부당사항】

- 「영동군 난계국악단 설치 운영 조례」 제11조의2 규정에 따르면 국악단의 공연수입금은 군 수입으로 하고, 「지방회계법」 제20조에 따르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歲入)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하며, 납입 고지를 하려면 납부의무자에게 세입과목, 납입할 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를 적은 문서로 하며,
-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금을 직접 수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까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고(金庫)에 납입하여야 함.
  1.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 수납한 날의 다음 날
  2. 그 밖의 경우: 수납한 날부터 5일이 되는 날
- 그럼에도. 국악문화체육과에서는 난계국악단 공연 후 입금된 수입금 중 총 24건에 대해 최소 1일에서 최대 28일까지 세입조치를 지연하는 등 수입금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분내용】

- 국악문화체육과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1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민간보조사업 정산검사 업무 소홀

【현 황】

○ 붙임참조

【위법부당사항】

-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정산보고 등)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및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라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지방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국악문화체육과에서는 아래 현황에서와 같이 「전통문화 전등축제 외 20건」에 대하여 사업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완료된 이후 2개월이 지나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정산검사를 실시하는 등 보조사업 정산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국악문화체육과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붙임

###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사업명	보조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완료일	정산서제출일	정산보고일	비고
2018	2018년 전통문화 연등축제	-	7,000	7,000	2018.05.	2018.10.28.	2018.10.29.	
2018	2018년 서예연합회 전시회	-	4,000	4,000	2018.10.	2019.01.11.	2019.01.11.	
2018	심천면지 편찬사업	-	30,000	14,968	2018.12.	2019.04.08.	2019.04.08.	
2018	황간 향교지 발간사업	-	30,000	30,000	2018.12.	2019.04.08.	2019.04.08.	
2018	영동의 마을유래집 발간사업	-	31,000	31,000	2018.12.	2019.04.08.	2019.04.08.	
2018	영동향교 기로연 행사	-	5,500	5,500	2018.10.	2019.01.21.	2019.01.22	
2019	제13회 환경미술협회 영동지회 회원전	-	2,000	2,000	2019.07.	2019.12.08.	2019.12.10.	
2019	제12회 한국 문인화협회 회원전	-	2,000	2,000	2019.10.	2020.01.09.	2020.01.09.	
2019	2019년 영동서예연합회 전시회	-	4,000	4,000	2019.10.	2020.01.09.	2020.01.09.	
2019	향교 역량강화 워크숍	-	6,000	5,392	2019.11.	2020.02.04.	2020.02.04.	
2019	심천면지편찬사업 (사고이월)	-	30,000	29,976	2019.12.	2020.03.17.	2020.03.17.	
2019	심천면지편찬사업 (명사이월)	-	20,000	20,000	2019.12.	2020.03.17.	2020.03.17.	
2019	영동의 문화 유적 사진전	-	15,000	15,000	2019.06.28.	2019.10.17.	2019.10.17.	
2019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	-	16,000	14,947	2019.02.28.	2019.05.02	2019.07.27.	
2019	황간향교 춘추기 석전대제	-	3,500	3,499	2019.09.	2020.01.10.	2020.01.10.	
2019	제5회 도마령 산촌문화축제	-	5,000	5,000	2019.08.	2020.01.14.	2020.01.14.	
2020	제26호 영동예술발간	-	8,700	8,700	2020.01.	2021.01.21.	2021.01.21.	
2020	제14회 환경미술협회 영동지회 회원전	-	2,000	2,000	2020.11.	2021.02.09.	2021.02.10.	
2020	남수일 선생지 발간	-	2,000	2,000	2020.12.	2021.03.31.	2021.03.31.	
2020	제3회 호탄벚꽃 문화축제	-	6,300	6,300	2018.04.	2018.09.11.	2018.09.11.	
2020	황간향교 춘추기 석전대제	-	3,500	3,500	2020.10.	2021.01.21	2021.01.21.	



【 일련번호 : 12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3,789,00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시설공사 간접공사비 정산 부적정**

【현 황】

○ 정산 부적정 현황

(단위: 원)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자	착공내역 간접공사비	회수금액	감액동의서 검토 및 정산 부적정	비고
<b>4건</b>				<b>3,789,000</b>		
□□□~□□삼거리 도로변 홍가시나무 식재공사	소 계			<b>451,000</b>		회수
	20.11.02.~ 20.11.18.	(주)□□건설 홍□□	769,193	351,932	미사용 간접공사비 감액	
				99,068	제경비	
□□□□□□ 수변데크 야간경관 조성사업	소 계			<b>855,000</b>		회수
	20.05.21.~ 20.06.23.	(주)□□전기 이□□	1,626,094	677,094	보험료 등 정산 착오	
				177,906	제경비	
□□□□□□ 유지보수공사	소 계			<b>876,000</b>		회수
	19.10.30.~ 20.09.29.	(주)□□건축 정□□	659,089	659,089	미사용 간접공사비 감액	
				216,911	제경비	
□□□□□철거공사	소 계			<b>1,607,000</b>		회수
	20.06.01.~ 20.12.04.	(주)□□□□ 김□□	15,039,973	1,265,517	설계변경 후 당초 금액으로 정산, 공사안내표지판6 제외	
				341,483	제경비	

【위법부당사항】

○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및 「건설공사 사업 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8조(공사관련 서류 검토·보고) 규정에 의거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준공단계에서 준공 검사원 등 관련문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함.

- 지침 제131조(시공사 제출서류의 검토) 규정에 의거 공사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출하는 준공검사원의 증빙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급자에게 문서로 보완 지시하여야 하며,
- 지침 제161조(기성 및 준공업무 관련)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원을 접수 하였을 때는 이를 신속히 검토·확인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그런데 국악문화체육과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삼거리 도로변 홍가시나무 식재공사> , <□□□□□□□□ 유지보수공사> 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간접공사비 사용 증빙자료나 감액동의서를 제출받지 않았음에도 준공 처리하였고,
- <□□□□□□□ 수변테크 야간경관 조성사업> , <□□□□□□철거공사> 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대상 금액이 잘못된 감액동의서를 제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인 및 검토를 소홀히 하여 상기 4건에 대한 총합계금액 3,789,000원(제 경비 포함)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처분내용】

- 국악문화체육과장은 과다 지급된 공사비 3,789,000원을 회수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3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설계변경 집행 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미이행

【현 황】

○ 미이행 현황

(단위: 천원)

공사명	변경집행일 (계약일)	계약 방법	도급자	계약금액			비고
				당초	변경	증가율	
영동군 □□□□□사업	20.07.30. (19.12.26.)	경쟁 입찰	(주)□□건설 김□□	1,463,861	1,659,750	13.4 %	

【위법부당사항】

- 「영동군 일상감사 규정」 제3조에 의하면, 설계변경 등으로 최종 추정가격이 일상감사 대상금액을 초과하거나 직전 일상감사를 받은 금액에서 10퍼센트 이상 증액되는 계약 건에 대하여 집행 전 일상감사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또한 「영동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제3조에 의하면, 계약금액 5억원 이상으로 1회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 금액)이 10퍼센트 이상 증액되는 공사의 설계변경은 계약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국악문화체육과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영동군 □□ □□□□사업>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추진하면서 최종 집행 전에 거쳐야 할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국악문화체육과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